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성숙 (중소벤처기업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‘가짜 장애인기업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85호, 2025. 5. 27. 공포, 11. 28. 시행)됨에 따라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‘1년’에서 ‘3년’으로 연장하고,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후 3년,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11. ~ 10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3항 중 “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3년
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1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1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

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) ①·② (생략)	제11조의3(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<u>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.</u>	③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</u>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3년</u>
<u><신 설></u>	2. <u>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25